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장관 귀하
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의하여,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감사결과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·회계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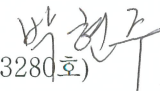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운영위원회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산학협력단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계	-			

- 붙임 1.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2.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2호 서식)

2026년 3월 30일

학교법인 경민학원

감 사 박 현 주 (인) 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280호)

감 사 김 재 무 (인) 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경민대학(교) 산학협력단

단 장 김 창 열 (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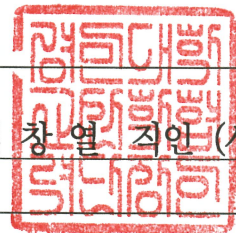
(별지 2호 서식)

경민대학(교)산학협력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산학협력단 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
피감사기관장	경민대학(교)산학협력단 단장 김창열 직인(사인)



감사보고서

경민대학교 총장

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,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2025회계연도 정관상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·현금흐름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현금흐름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6년 3월 30일

학교법인 경민학원

감사 박현주



감사 김재무



피감사자 (입회인)

산학협력단장 김창열

